

대전지방법원 2023. 4. 11 선고 2022가단10710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메리트

담당변호사 김철호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대웅

변 론 종 결 2023. 3. 28.

판 결 선 고 2023. 4.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C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19. 체결된 매매예약을 23,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C이 원고를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 소송(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가단2481)을 제기해 C이 전부 승소하였다.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했고(대전지방법원 2018나103776), 그 항소심에서 2020. 1. 6. 조정이 성립되어, 원고는 C에 대하여 2,300만 원의 채권을 갖게 되었다(변제기 2020. 6. 30.).

나. 한편, C은 2018. 6. 19. D로부터 5,5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9. 6. 20.으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그 담보로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설정해주었다.

다. 이후 D은 2021. 5. 3. 피고에게 위 매매예약을 계약양도하고, 2021. 5. 4. 위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도 피고에게 이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1, 2,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는 C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2020. 9. 8. 재산명시신청을 했고, 같은 날 원고의 변호사가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하여 D 앞으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가 설정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위 일시에 사해행위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등기부상 D에 대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설정 당시 별다른 선순위 담보는 없었고, D에 대한 채무액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사해행위를 의심할 만한 별다른 정황이 보이지 않았던 점에서, 원고가 등기부를 열람하여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것만으로 그 무렵 취소원인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밖에 달리 원고가 위 일시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다2633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해 살피건대, 원고는 2020. 1. 6. 조정성립에 따라 C에 대하여 2,300만 원의 채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이는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C의 2018. 6. 19.자 매매예약이 있는 후에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위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원고는 위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2016년경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도 답변서에서 '원고가 C와의 소송에서 필요비 내지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주장한 결과 위와 같은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갑 제6호증의 1에 의하면, 원고가 2016년경 실제로 C 소유 사찰 보수공사 등을 진행했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일응 원고의 위 주장은 납득할 만하다.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2018. 6. 19.자 매매예약 이전인 2016년경 이미 발생해 있었고, 이후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채권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한다.

나. 채무자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재산처분행위로 인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지거나 그 정도를 심화시켜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경우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축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C은 2018. 6. 19. 당시 적극재산으로 시가 87,879,7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과 소액의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소극재산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금융기관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고 있지 않았다),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다. 당시엔 원고의 채권액이나 변제기 등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도 않았고, 사후적으로 조정을 통해 확정된 2,300만 원을 소극재산에 반영하더라도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음은 마찬가지이다. C이 D로부터 2018. 6. 19. 5,5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9. 6. 20.로 정해 차용하긴 하였으나 변제기까지의 원리금(68,272,131원)이 적극재산보다 적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매매예약 및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설정만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지는 상황이 초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C과 D 사이의 2018. 6. 19.자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거나 C이 당시 사해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C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채무자인 C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욱

별지

목록

1. 충청남도 공주시 임야 446㎡

2. 충청남도 공주시 , ,

☐ 동 시멘트블록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17.5㎡

부속건물

☐ 동 시멘트블록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45.3㎡

☐ 동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8.6㎡. 끝.

